[서식 예] 주위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(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)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⟨★★★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주위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는 피고의 소유인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 대 120㎡ 중 별지도면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표시 (가)부분 20㎡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.
- 2.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항 기재 (가)부분 20m²의 토지주변의 담장을 철거하라.
- 3.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위 부분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5.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의 토지소유권
 -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230㎡는 원고의 소유인바, 위 토지의 주위는 모두 타인의 소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바로 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2. 원고의 건물소유권 원고는 위 토지상에 주택 1동 건평 165.29㎡를 소유하고 이에 거주하고 있습니
- 3. 피고의 토지소유권

다.

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하여 같은 동 ○○○ 대 120㎡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

4. 원고의 통행권

원고는 지금까지 피고 소유의 위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(가)부분(다음부터 「이 사건 토지부분」이라 함)의 공한지 부분을 공로에의 통로로서 사용해왔습니다.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통행하게 되면 원고의 일상생활의 필요는 충족됨과 동시에, 이 사건 토지부분은 피고의 토지 중 남단의 조그마한 부분에 해당하여, 피고로서는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.

5. 피고의 통행방해

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, 2000. O. O.경 그의 소유지 전체에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 등의 통로의 일부를 막아버려 그 통로사용을 방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6.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, 위통행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인 권리이므로, 이에 기하여 담장의 철거와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,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의 1, 2 각 토지대장등본

1.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

1. 갑 제4호증의 1, 2 각 사진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도 면

1 2
OO시 OO구 OO동 OOO (가)
대 100m²(120m²-20m²)
4 3
임야
OO시 OO구 OO동 OO 대 230m²

임야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이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